

<p>오늘 사직원을 제출한 議員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p> <p>地方自治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辭職 議員께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앞서 일괄 상정된 25개항의 안건은 地方自治法 제69조 및 同法施行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本會議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宋德華議員 등 25인이 제출한 辭職에 대한 허가여부를 일괄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p> <p>議員 여러분, 辭職에 허가하십니까? (「네」하는 議員 있음)</p> <p>여러분의 허가가 있었으므로 辭職 허가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hr/> <p>26.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27.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28. 서울特別市公共施設設置 및 管理運營委託에 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0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特別市公共施設設置 및 管理運營委託에 關한條例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p> <p>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같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1144</td> <td style="width: 15%;">1998. 4.</td> <td style="width: 55%;">재무경제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p>	의안 번호	1144	1998. 4.	재무경제위원회	<p>199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1998년 4월 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재무국장 김태수) 가. 제안이유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대상 자동차를 확대하며,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주택 등이 입주되어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므로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의 금융부채상환 및 사업양수도시 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 ○ 현행은 상이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화물차 및 승합차 중 1대를 포함 취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안 제2조 및 제4조)</p> <p>○ 현행은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거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동의·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시세를 50% 경감하고,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구체화하였음.(안 제23조의2)</p> <p>○ 현행은 기업자가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업양수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시세를 면제하고 금융업·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구체화하였음.(안 제</p>
의안 번호	1144	1998. 4.	재무경제위원회		

23조의3).

○ 대도시내의 준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음.(안 제23조의4)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기업의 금융부채상환 및 사업양수도시 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 현행 상이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차 1대에 한하여 시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화물차 및 승합차 중 1대를 취득하여 보철용 또는 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세를 면제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심적 고통이 큰 상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적게나마 물적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 현행 기업자가 주거대출행의 요청에 의거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라고 강화하는 것은 다수의 기업자들이 부동산매각의 범람을 막기 위한 취지라 생각되나 다만, IMF한파로 기업회생을 위해 전전 궁궁하고 있는 5년내 사업을 영위한 기업자들에게는 금융부채상환의 활성화에는 반한다고 보여지며,

- 기업자가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업양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시세를 면제하되 금융업·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원활한 산업구

조 조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주택이 입주되어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함으로 인해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토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8명 전원일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45
----------	------

1997. 4.
재무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1998년 4월 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재무국장 김태수)

가. 제안이유
삼풍건설(주)로부터 기부채납된 청평화상가내의 상가 및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청평화상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근거 신설

○ 매각대상 : 청평화상가내의 상가 및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

○ 매각방법 : 상가 및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의 기존 임차인에게 수의매각(안 제39조제4호)

○ 대금납부방법 : 5년 분납 연리 8%(안 제22조제3항제6호)

※ 청평화상가 재산현황

위 치	규 모(평)	용 도(개소)	비 고
중구 신당동 217-91	토지: 536평 건물: 3,377평	임대점포: 542 임대아파트: 47	지하 1층 지상 6층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5호·제100조제1항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동수)

○ 동 개정조례안은 삼풍사고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수차에 걸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유찰되어 재산매입예산 390억원을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 집행하는 조건으로 삼풍건설(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임대사업 등을 위탁하고 있는 중구 신당동 217번지 91호에 소재한 청평화상가내의 상가 및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를 각 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할납부(5년 이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시유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정입찰에 의거 매각하여야 하나

○ 동 상가 임주자들의 입찰발해, 계속점유사용이 가능함에 따른 명도 소송제기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25호 및 제100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그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그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일부 임차인들이 계속 임대사용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미매각분에 대하여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수의계약기간을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가 및 아파트별로 개별매각시 상인들의 권리금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각시기는 서울특별시장과 상가 및 아파트 임대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으로 1997년 4월 24일 청평화시

장 상인조합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내용에 보면, 당시 서울시의 감정가격이 595억 5,3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유찰로 최종 가격인 390억원에도 낙찰되지 않았으며, 상인들은 매수가격으로 330억원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4. 질의·답변: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8명 전원일치)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43

1998. 4

재무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1998년 4월 1일

다. 회부일자: 1998년 4월 2일

라. 상정일자: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1998년 4월 6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기획관리실장 도명정)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 개별조례로 설치·운영중인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단일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일원화하려는 것임.

공공시설의설치근거규정(안 제3조, 별표 1)

○ 「시립은평의 마을」 등 43개 시립공공시설의 시설명을 별표에 규정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위탁 근거마련(안 제4조, 별표2).

○ 수탁대상자: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

수탁자 선정기준(안 제5조)

○ 선정방법: 필요시 전문가 등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선정기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기술수준·개

<p>정적인 부담능력·책임능력·공신력 및 관련분야 전문성·사무처리 실적 등</p> <p>□ 위탁방법(안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을 위탁 ○ 위탁계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탁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 만료 30일전 위탁사무처리사항을 평가하여 재계약여부 결정 <p>□ 수탁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비용 등 <p>□ 사용료 등 비용의 징수(안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자 등에게 법령·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 등 징수가능 <p>□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시설·장비·비용 등 성실관리·집행 ○ 위탁계약 사항 준수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지시사항 이행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시 시장의 사전 승인 등 <p>□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1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사무처리 지침 작성·시달 ○ 위탁사무의 이행사항 등 감사·조사 실시 <p>□ 위탁의 취소(안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의 의무위반, 운영능력 결여, 위탁계약 조건 위반 등 ○ 취소시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p>□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p>□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 서울특별시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 	<p>영에 관한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놀이마당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p>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 개별조례로 설치 운영중인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단일조례로 통합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하여 그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 공공시설의 설치근거규정과 관리운영 위탁근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운영·지원과 의무, 위탁계약, 비용의 징수,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위탁의 취소,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각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령에 의거 제정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등 유사한 5개 조례를 통폐합,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능률제고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정부서인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의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은 자치13130-798호('98.9.30) 질의 회신에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다른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인적·물적요소가 함께 포함된 영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3조(명칭 및 위치)에서 공공시설로 정한 동춘토성은 지방문화재(시유보존재산)로의 보존관리가 주목적이라고 볼 때 이는 본조례의 적용대상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 제3조(명칭 및 위치) 제1항의 “별표1” 서울특별시립 공공시설과 제4조(운영의 위탁)
---	---

<p>제2항의 “별표2” 위탁사무에서 각각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p> <p>○ 제6조(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폐지대상조례 5건 중 3건은 조례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및 몽촌토성에 대한 위탁기간은 계약서에 의거 각각 3년으로, 서울놀이마당은 1년으로 계약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사용허가기간)의 규정에 의거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6조(위탁계약)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p> <p>○ 제4조(운영의 위탁)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2”와 같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사무는 “별표2”와 같다」로,</p> <p>제7조(운영지원) 제2항은 공공부지 등에 대한 소유자가 반드시 서울특별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공부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p> <p>5. 수정안의 요지</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4월 6일, 이정의의원 외 1인</p> <p>나. 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시설은 제외하고 위탁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각 공공시설 위탁사무의 효율화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운영의 위탁에서 위탁할 수 있는 시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공공시설은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사무로 하고, 운영지원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p>공공부지 등은 소유자가 반드시 서울특별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유재산으로 하고자 함.</p> <p>다. 수정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보기가 어려운 몽촌토성을 제외함. ○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명시함. ○ 공공시설은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조문중 “위탁할 수 있는 시설”로 표기된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사무”로 함. ○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공공부지 등은 반드시 서울특별시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유재산이라고 함. <p>6. 심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안 의결(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8명 전원일치) <p>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서울特別市公共施設設置 및 管理運營委託에關한條例案은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p>
---	---